

제13798호

관보

1998. 1. 5. (월요일)

토 지			용도지역별 편입조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제외지	비고
장안	수촌	산92-1	임	3,669	3,555		3,555	114	
		-2	"	30,208	30,208		30,208		
		-3	목	4,088	3,905		3,905	183	
		-4	구	1,825	1,825		1,825		
		-5	구	228	228		228		
		-7	임	1,864	1,659		1,659	205	
		-8	"	254	47		47	207	
		산90	"	50,248	2,358		2,358	47,890	

○사업시행자

- 명칭: (주)대영포장
- 주소: 안산시 원시동 725-8번지
- 대표자: 대표이사 김승무

○사업시행방법: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시행

○사업시행기간: 1998년 1월~1998년 12월

◎충주시고시제 1997-154호

수안보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수안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충주시청 지역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8년 1월 5일

충주시장

가. 수안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면적(m ²)			
도시계획명	구분	시설명	위 치	변경 전	변경 후
수안보 변경	주차장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305번지 일원		8,800 (감)3,000	5,800
				터미널위치 변경에 따른 면적 감	

나. 수안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도 및 지적승인도: 별첨(생략)

◎충주시고시제 1997-155호

수안보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지적승인

1. 수안보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충주시청 지역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8년 1월 5일

충주시장

가. 수안보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지적승인조서

		면적(m ²)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변경 전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307-1번지 일원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305번지 일원
				3,000	
				—	
				3,000	
				위치변경	

나. 수안보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지적 승인도: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논산시고시제 1997-446호

연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연산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도시과(30-1431, 1432)와 연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

1998년 1월 5일

논산시장

○연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별첨

○연산 도시계획 지적승인 도면: 별도 붙임(생략)

제13798호

관 보

1998. 1. 5. (월요일)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 시장(농산물 공판장시설(청과))

구분	도면 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위	면 적(㎡)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1	시 장 농 산 물 공 판 장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467번지의 12필지 (청과)	증 18,781	-	증 18,781	18,781		

☐ 시장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장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농협농산물공판장	-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변경없음) - 농산물공판장(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결정.

◎영주시고시제1997-355호

- 영주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8년 1월 5일

영 주 시 장

가. 위 치: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13 일원
나. 국토이용계획변경 용도지역: 준도시지역(시설

· 용지지구)

- 다. 국토이용계획변경조서: 별항
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도: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계획
○사업명: 영주동양실버타운 건립
○토지이용계획조서: 실음생략
○토지이용계획도: 실음생략
○개발사업의 시행자: (주)동양실버타운 대표 김석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997년~2000년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km²)

행정구역	고시면적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고
		기	정 변	기	정 변	
영 주 시	668.501	0.489	0.502	189.312	189.299	
안정면	43.664	0	0.013	20.339	20.326	

○용도지구

행정구역	계		시설용지지구		고
	기	정 변	기	정 변	
영 주 시	0.489	0.502	0.015	0.028	
안정면	0	0.013	0	0.013	

○목 적: 동양실버타운지구 조성
○위 치: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13 일원
○면 적: 13,145㎡
○관리번호: 6-6-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1997-115호

기존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의양성화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의특례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거나 지정

된 지역, 지구안에서 건축제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대구두산초등학교외 3개교의 시설을 양성화 하고 동법 부칙 제2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현황도면, 토지의

고

시

논산시 고시 제1997 - 446 호

연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연산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730-1431, 1432)와 연산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8. 1. 5.

논 산 시 장

○ 연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별도 붙임

○ 연산 도시계획 지적승인도면 : 별도 붙임(생략)

연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1997. 12. .

논 산 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 시 장 [농산물 공판장시설(청과)]

구 분	도면 표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시 장	농산물 공판장 (청과)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467 번지외 12필지	-	증 18,781	18,781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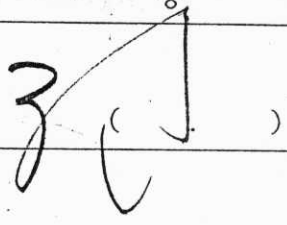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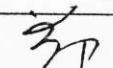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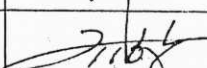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장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①	농협 농산물 공판장	-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변경없음〉 - 농산물공판장(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시장결정

논 산 시

우 320-03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24 전화 (0461) 30 - 1431/ 담당 배 일 현
 ※논산텔 접속방법 : 01410접속→NSIA입력 ※ 논산시인터넷주소 : http://ns.nonsan.chungnam.kr

문서번호 도시 58413 - 1256
 시행일자 1997. 12. 20. (5년)

경유 (제 1 안)
 받음 내부결재
 참조

취 급		시	장	
보 존	년			
부시장				
국 장				
과 장				
계 장		공보계장 		
기 안	배 일 현 	협조		

제목 연산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1. 충남 고시 제205호('74. 12. 18)호로 도시계획결정 및 충남고시 제273('89.12.30)호로 재정비 결정된 연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2.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고시코자합니다.

붙임 1.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각 1부.

2. 고시도면 1부. 마침.

논 산 시 장

(제 2 안)

받음 총무처장관

참조 법무담당관

제목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관보게재의뢰

논산시 연산면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관보게재 의뢰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승인조서 1부. 마침.

논 산 시 장

(제 3 안)

받음 충청남도지사

참조 건설도시과장

제목 연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보고

1. 충남 고시 제273('89. 12. 30)호로 제정비 결정된 연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해와거기

2.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임조서 및 도면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1부.

3. 고시도면 1부. 마침.

논 산 시 장

(제 4 안)

받음 연산면장

제목 연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알림

연산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하였으니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에게 관계도서를 열람시키기 바라며 중
전도면을 수정할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1부.

3. 고시도면 1부. 마침.

논 산 시 장

(제 5 안)

받음 지적과장

제목 연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연산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하였기 통보하니 민원서류 발급에 착오없이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도면 1부. 마침.



논 산 시 장